

2021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안내

< '20.12.31(목),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>

□ 추진 경과

- 현장 의견 수렴(지자체, 사회보장정보원, 한국보육진흥원, 안전공제회, 육아중, 한어총)을 통한 지자체 보육담당 및 현장 등 의견 접수(10.29~11.11)
- 기관별 제출 의견 검토 및 제도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내부 발굴(11~12월)
- 보건복지부, 지자체, 보육진흥원, 육아중 보육사업안내 지침 토론회(11.16,20,23.), 복지부-한어총 영상회의(12.9) 및 개정사항 보완(~12월)

□ 주요 개정사항

- (학과제 연착륙 지원) 선행조치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채용시 2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교직원 관리 내용 개정
 - '21년 지침 개정시 "22년 신규 채용시부터 적용"으로 현장 부담 최소화
- (보육교직원 잠복결핵감염 관리) 판정 시 치료를 권고,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대체교사 지원*으로 배양검사 기간(3~8주)동안 격리
 - 이 경우 대체교사 최대 지원기간(4주→8주) 상향 조정 가능
- (국공립 전환대상 기준 확대) 300세대 미만(기존 300세대 이상)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입주자 과반수 동의시 국공립 전환 지원
 - *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, 500세대 미만의 경우 과반수 동의로 전환 지원
- (어린이집 운영위원회) 당해 어린이집의 장, 보육교사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5인*(기존 5~10명) 이내로 구성
 - * 영유아보육법 개정(12.29.)에 따라 '21.6월까지 시행령 개정 예정
- (임면보고 간소화)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대체 조리원 및 1년 내 어린이집 자체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간소화

- (매월 호봉 승급) 기존 반기별 호봉 승급방식을 시스템 개선* 지원을 통해 매월 1일자 승급으로 변경 시행
 - * 지자체의 최초 호봉 확정 후 교직원별 재직기간 1년 도래시 자동 승급 알림
- (원장의 겸임 제한 완화)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, 발표회 등에 참석하여 강연·강의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승인과 지자체 보고 후 가능
- (어린이집 업무편의) 어린이집 입력자 기준으로 예산 신청 일정을 5일(보육료), 10일(보조금), 말일(각 수당)로 유도하여 어린이집 업무편의 지원

구 분	쪽	현 행	개 정
학과제 연착륙 지원	178	<p>. 보육교직원 채용</p> <p>1)채용조건</p> <p>나) 보육교사</p> <p>※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</p>	<p>나. 보육교직원 채용</p> <p>1)채용조건</p> <p>나) 보육교사</p> <p>※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</p> <p>*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은 보육교사 1급, 2급 자격소지자로 제한함(적용시점 '22.1월부터)</p>
보육교직원 잠복결핵 감염 관리	108	<p>가. 건강관리</p> <p>3) 건강주치의제도</p> <p>다) 검사항목</p> <p>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(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결핵검진: 매년 실시(임상적·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, 객담(咯痰)의 결핵균 검사 등)하되, 신규채용(휴직·과건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)된 보육교직원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※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 • 잠복결핵검진: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(다른 기관·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) 중 1회 실시(면역학적 검사) 	<p>가. 건강관리</p> <p>3) 건강주치의제도</p> <p>다) 검사항목</p> <p>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(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결핵검진: 매년 실시(임상적·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, 객담(咯痰)의 결핵균 검사 등)하되, 신규채용(휴직·과건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)된 보육교직원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※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 • 잠복결핵검진: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(다른 기관·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) 중 1회 실시(면역학적 검사) • <u>보육교직원 잠복결핵감염 판정 시 치료 권고</u> • <u>보육교직원이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배양 검사 기간(3~8주)*동안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(업무 배제)토록 함</u> <p>* 결핵진료지침 4판에 근거(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)</p>
국공립 전환대상 기준 확대	419	<p>다)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</p> <p>(1) 지원대상</p> <p>○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 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</p> <p>※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</p> <p>< 신 설 ></p> <p>(2) 지원규모</p>	<p>다)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</p> <p>(1) 지원대상</p> <p>○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 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</p> <p>※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</p> <p>○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 중 의무어린이집은 아니나, 보육수요 발생 등으로 국공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가 장기 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</p> <p>※ 예 : 해당 읍면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경우</p>

구 분	쪽	현 행	개 정
		<p>최대지원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: 110,000천원/개소(국비, 지방비 포함) <p>(3) 고려사항</p> <p>○ 기존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또는 전환할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우선함</p>	<p>(2) 지원규모</p> <p>○ 최대지원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(의무어린이집 포함)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: 110,000천원/개소(국비, 지방비 포함) <p>(3) 고려사항</p> <p>○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또는 전환할 경우에는 <삭제>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우선함</p>
어린이집 운영위원회	137	<p>. 설치 및 운영</p> <p><중략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, 보육교사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(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)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- 단,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※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(2012)」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, 지방자치법 제 35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(법제처 법령해석 사례, 17-0433(2017. 10. 19)) 	<p>가. 설치 및 운영</p> <p><중략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, 보육교사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(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)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*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,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. * 100인 미만 어린이집: 5인 이상 9인 이내,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어린이집: 10인 이상 15인 이내 - 단,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※ 지역사회 인사는 「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(2012)」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, 지방자치법 제 35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(법제처 법령해석 사례, 17-0433(2017. 10. 19))
임면보고 간소화	452	<p>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</p> <p>라. 지원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- 다만,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	<p>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</p> <p>라. 지원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- 다만,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-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
매월 호봉 지급	197	<p>나. 호봉획정 및 호봉지급</p> <p>6) 호봉지급</p> <p>○ 호봉 지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</p> <p>※ 2020년 호봉인정기준 개선에 따른 호봉 재획정 기간을 고려, 2020. 1. 1. 기준으로 2월까지 재</p>	<p>나. 호봉획정 및 호봉지급</p> <p>6) 호봉지급</p> <p>○ 호봉 지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</p> <p>※ 적용시기 : ' 21년 7월 1일부터 실시(시스템 개발 이후)</p>

구 분	쪽	현 행	개 정
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완료</u></p> <p>- ' 20년 1월 승급은 기존대로 진행하고, 호봉인정기준 개정내용은 2월부터 적용</p>	
원장의 겸임 제한 완화	209	<p>나)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</p> <p>○ <생략></p> <p>○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하는 바,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연·강의·발표·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</p> <p>※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</p>	<p>나)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</p> <p>○ <생략></p> <p>○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하는 바,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<u>긴 이동시간 등 불가피한 사유로</u>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연·강의·발표·토론하는 행위는 <u>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승인과 지자체 보고 후</u> 할 수 있음</p> <p>※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</p>
어린이집 업무편의	351	<p>마. 지원 절차</p> <p>3) 지원금 신청(어린이집→시군구)</p> <p>○ (신청)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연장보육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</p>	<p>마. 지원 절차</p> <p>3) 지원금 신청(어린이집→시군구)</p> <p>○ (신청) 어린이집은 매달 5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연장보육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</p>